

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 상조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원의 상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 간의 사기진작 및 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과 사무소) ① 본 회의 명칭은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 상조회(이하 “상조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② 상조회의 사무소는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(이하 “새노동조합”이라 한다)에 둔다.

제3조(재정) 상조회의 재정은 새노동조합의 예산으로 한다.

제4조(자격 취득 및 상실) ①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 상조회원(이하 “상조회원”이라 한다)은 조합의 조합원 및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.

② 상조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퇴직한 때(명예퇴직 포함)
2. 사망한 때
3. 조합 산하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(공사, 공단 포함)으로 임용되었을 때
4. 제명된 때
5.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

제5조 (임원과 직무) ① 회장은 위원장이 되며, 상조회의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총무는 조합의 재정국장이 되며, 여신업무를 관장한다.

③ 감사는 조합의 회계감사위원장이 되며, 회무를 감사한다.

제6조(상조대상 및 범위) ① 회원에 대한 상조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합원 퇴직 및 타 기관 전출
2. 경사 : 본인 및 자녀 결혼,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, 본인 생일

3. 조 사 : 본인 및 배우자 사망, 본인 및 배우자의 조·부모(양부모 포함) · 자녀 사망

② 그 밖에 여신 등 특별한 사안 발생시 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7조(지원금) ① 상조회원에 대하여는 조합의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
이 해당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(물품)을 지원한다.

1. 조합원 퇴직 및 타 기관 전출

- 조합원 가입기간(조합비납부기간) 1년 이상 5년 미만 : 10만원
- 조합원 가입기간(조합비납부기간) 5년 이상 10년 미만 : 20만원
- 조합원 가입기간(조합비납부기간) 10년 이상 20년 미만 : 30만원
- 조합원 가입기간(조합비납부기간) 20년 이상 : 50만원

2. 조 사

- 본인 사망 : 50만원 및 조기
- 배우자 사망 : 30만원 및 조기
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(양부모 포함) : 20만원 및 조기(지급횟수는 2회에 한함)
- 자녀 사망 : 20만원 및 조기
-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(양부모 포함) 사망 : 조기

3. 경 사

- 본인 결혼 : 10만원
- 자녀 결혼 : 10만원(지급횟수는 2회에 한함)
-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: 10만원
- 본인 생일 : 3만원

② 조합비(준·후원조합비)를 1년 이상 납부하고 6회 이상 체납되지 아니한
회원(본인 생일의 경우 3개월 이상 납부하고 3개월 이상 체납되지 않은 회
원)에게 지급한다. 단, 미납 조합비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이를 공제하
고 지급한다.

③ 부부조합원 및 양가 직계 조합원인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현금
지급분에 한하여 각각 지급한다.

제8조(상조회 장례물품 제공) ① 조합은 제9조제1항 제2호 중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상조물품을 제공한다.

② 조합은 부득이하게 회원에게 장례물품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제9조(지원금 신청 및 지급) 상조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, 회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한다.

1. 경·조사 : 별도의 신청서식 없이 유선 또는 내부 전산망으로 경·조사 내역 및 계좌번호 포함하여 신청

2. 퇴직 및 타기관 전출 : 내역 확인은 인사명령으로 갈음하며 별도의 신청서식 없이 유선 또는 내부 전산망으로 계좌번호 포함하여 신청

② 미공지, 미제출 등으로 인한 상조금 미지급시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「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 규약」의 제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(상조대상 및 범위) 중 본인 생일 지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급적용) 이 규정 시행 전 가입하고 경·조사 지원 사유가 발생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조합비 납부기간이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해당 지원금액을 지급한다.